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동 공고 제2022- 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2021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 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 6.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동장

청구 동장인

1. 공 고 명: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6. 10. ~ 2022. 6. 23.
3.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4.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5. 의견제출기간: 2022. 6. 24. ~ 2022. 7. 7.
6.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연번	성명	주소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비고
1	이*형	서울 중구 청구로1길 23, 10*동 *01호	2021년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 10만원 부과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2	최*빈	서울 중구 청구로3길 2*-6	〃	〃	〃
3	고*욱	서울 중구 다산로28가길 *4	〃	〃	〃
4	고*영	서울 중구 다산로14길 *1	〃	〃	〃
5	박*명	서울 중구 청구로3길 2*-2	〃	〃	〃
6	임*현	서울 중구 청구로1길 *2, 30*호	〃	〃	〃
7	정*열	서울 중구 동호로10길 30, 11*동 10**호	〃	〃	〃
8	홍*원	서울 중구 청구로1길 23, 10*동 11**호	〃	〃	〃

7. 공시송달 내용

가. 대상자께서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7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역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공시송달(공고) 내용에 의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서울 중구 청구동 동정부2팀(☎02-3396-6806, FAX 02-3396-8971)